

## 6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

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휴양림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외 205 건인

144,567,533,497 원으로서

- 명시이월 ( 88 건) 47,299,471,630 원
- 사고이월 ( 32 건) 8,769,242,850 원
- 계속비이월 ( 86 건) 88,498,819,017 원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